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2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. 11. 15. 권영숙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2024. 11. 18.

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4. 11. 2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한선미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,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1조 ~제3조)
-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)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[장홍용 전문위원]

-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,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-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
 - 2023년도 한국장애인 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지비용(23.5%)부분이 가장 많았으며, 한국장애인 재단과 기업이 참여하는 ‘드림카 프로젝트’ 사업은 수혜 대상이 연평균 40대 정도로 매우 적은 실정임.
 - 우리구 현황을 보면 2024. 9. 현재 등록장애인은 12,450 명이며 이중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발급 차량은 4,767대로

약 38%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본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 점검에 소홀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점검을 지원하여,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 이상 유무 점검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차량사고를 예방하고 점검을 받은 경비를 일부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,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○ 종합검토의견
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32조의6(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) 및 같은법 제39조(장애인의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에 의하면 「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」라고 규정하고 있음.

자동차로 장애인이 이동할 때 자동차의 구조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받아 자동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 편의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50%~60%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취지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

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신청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, 아울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 마포구지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자료

1. 관계법규

장애인복지법

제32조의6(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. <개정 2017. 12. 19.>

1.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
 2.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
 3.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
 4.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
 5.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의 연계
 6.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 7.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9.>

제39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

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
제8조(지원)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2. 마포구 장애인 현황 [2024. 9. 기준]

계	심한	심하지 않은
12,450명	4,698명	7,752명

※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발급 차량 : 4,767대 (장애별 구분 자료 없음)

3.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제도

지원주체	지원대상	지원내용
한국교통공단	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(공단검사소 방문 필수) ※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	심한 장애 : 50% 심하지 않은 장애 : 30%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